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기덕 의원 외 13명

나. 의안번호 : 제2188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10. 16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0. 18.

2. 제안사유

- 2014년 2월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서울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, 시민들에게 주차장 위치 및 주차요금 등의 이용정보 제공으로 시민 편의는 물론 주차장 이용률 제고
- 최근 IT 등 통신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촉진을 확대하고자, 스마트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의 편리성 확대 도모

3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조항 신설 (안 제4조의3)
- 나. 상위법령에 맞춰 띄어쓰기 등 수정 (안 제3조 및 제3조의2,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4. 10.23 ~ 2024. 10.27.
-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- 제출의견 : 원안 가결
 - 서울시는 2014년부터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영주차장(시, 구) 및 민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시 전역에 대해 제공 중에 있으며, 제4조의3조는 기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동의함

1) 주차계획과-20611('24.10.30.) “제327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”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주차정보 부재로 인한 불법주차와 배회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‘대시민 주차정보안내를 위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’²⁾을 수립하고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및 홈페이지³⁾를 통해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- 또한,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등의 기능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해 해마다 계획 수립⁴⁾을 통해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

2) [대시민 주차정보안내를 위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] 주차계획과-4849(2012.4.10.)
- 언제, 어디서, 누구나,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필요한 주차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「통합주차정보시스템」을 구축하여 대시민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용역 시행

3) ‘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’ <https://parking.seoul.go.kr/>

4) [‘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‘25년도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시행계획] 주차계획과-10125(2024.8.28.)
- 자치구 주차실태자료 실시간 통계관리 및 대시민 주차정보안내를 위해 기존 개발프로그램의 기능개선과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시행

현실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임

-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4⁵⁾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차장 정보망 구축·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시장 등에게 주차장 운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주차정보 연계 및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 자치구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

- 향후 서울시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의 기능 강화가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임

5)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4(주차장 정보망 구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 - 이하 생략-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2.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
3.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